



제1597호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레

○ 조	레 제 1757 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2
○ 조	레 제 1758 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공포문	4
○ 조	레 제 1759 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0
○ 조	레 제 1760 호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문	12
○ 조	레 제 1761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5
○ 조	레 제 1762 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문	27
○ 조	레 제 1763 호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공포문	35
○ 조	레 제 1764 호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 공포문	39
○ 조	레 제 1765 호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문	47
○ 조	레 제 1766 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공포문	51
○ 조	레 제 1767 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60
○ 조	레 제 1768 호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70
○ 조	레 제 1769 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77
○ 조	레 제 1770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84
○ 조	레 제 1771 호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88
○ 조	레 제 1772 호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문	94
○ 조	레 제 1773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98
○ 조	레 제 1774 호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문	101
○ 조	레 제 1775 호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공포문	106
○ 조	레 제 1776 호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15
○ 조	레 제 1777 호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18
○ 조	레 제 1778 호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125
○ 조	레 제 1779 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129
○ 조	레 제 1780 호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공포문	139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57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남동타워”를 “청년미디어타워”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남동복지관”을 “남동구 평생학습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도시관리공단 신규 및 명칭변경 위탁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추진 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명칭변경(제23조 제10호, 제16호)
 - 남동타워 관리·운영사업->청년미디어타워 관리·운영사업
 - 남동복지관 건물 위탁관리->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 목적사업 추가(제23조 제22호, 제23호)
 -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58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동구 의회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국장
3. 공정무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 및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
-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무역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구청장 책무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제5조)
-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 규정(제6조, 제7조)
-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59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 여론 및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 참여로 소통 행정 도모
- 소셜미디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 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
: 안 제24조 ~ 제26조, 제28조, 제2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0호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동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남동구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보조금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제3조)
-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제6조)
- 준용에 관한 사항(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1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동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5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복무선서,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제2조 ~ 안 제4조)
- 근무기강의 확립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안 제6조)
- 서류보관, 당직·비상근무, 겸임·파견근무, 복장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 제10조, 제12조)
-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제13조)
-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1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2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본부장은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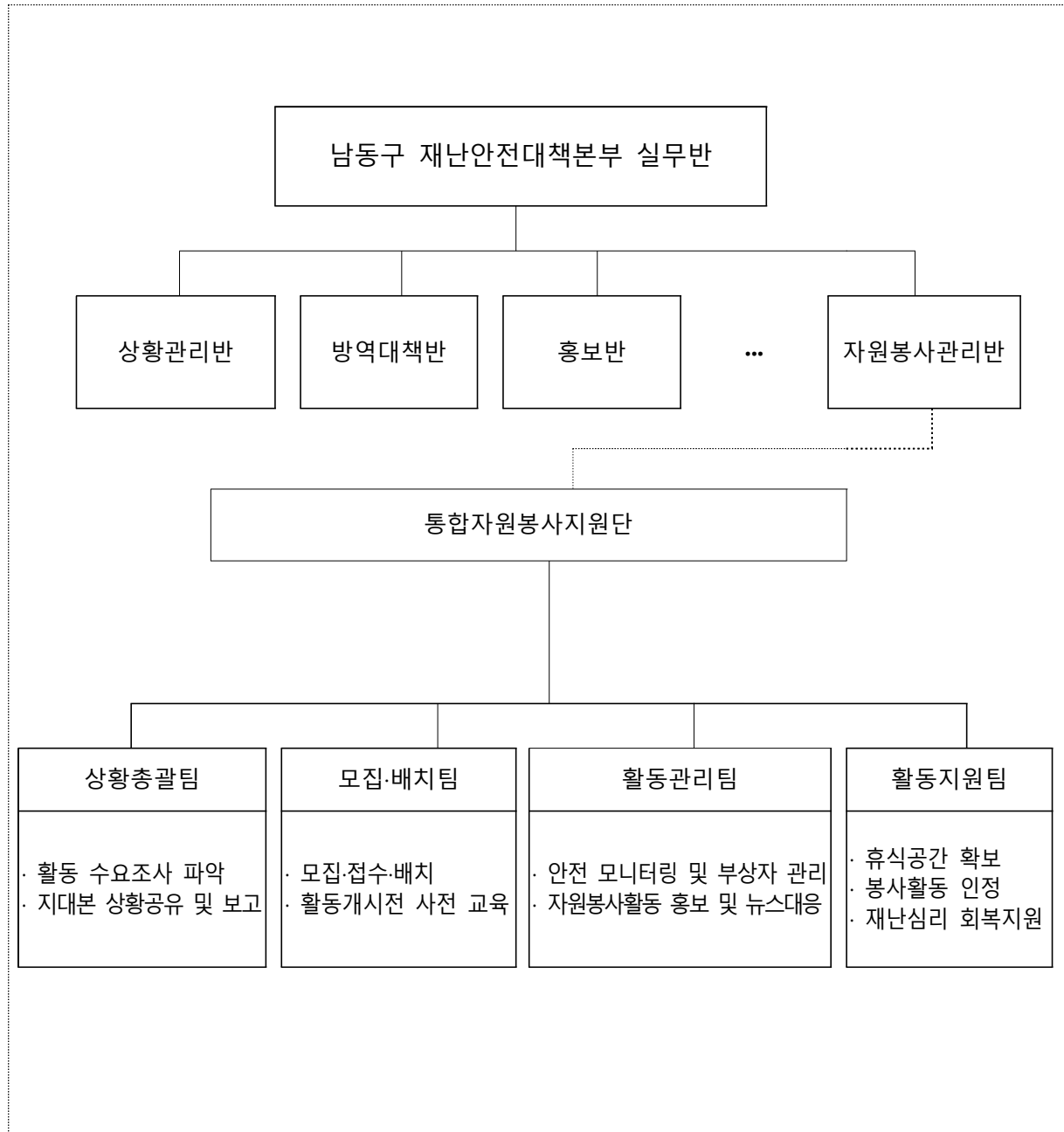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 ·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000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총괄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000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
	000 (자원봉사업무 담당자)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및 상황공유
모집·배치팀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000 (자원봉사센터)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모니터링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 활동 홍보
	000 (자원봉사단체)	▶ 피해복구활동 및 구호품 지원
활동지원팀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000 (자원봉사센터)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확인서 발급 등)
	000 (대한적십자사)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조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및 구청장의 책무(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제3조)
- 지원단의 구성(제4조)
- 단장의 임무(제5조)
- 실무팀의 편성(제6조)
- 지원단의 설치장소(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제9조)
-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3호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

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구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
- 사무의 위탁 (제6조)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4호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이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내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여행업자”란 법에 따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업자
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관광일정을 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구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의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 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내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의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모니터)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지역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안·제보 및 건의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관광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다른 시·군·구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관광모니터로서 품의를 손상시킨 때

제12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건의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
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
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행사 여론수렴 제보

제13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및 지급제외 (제4조, 제5조)
-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7조)
-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8조)
-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제9조)
- 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5호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

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대상)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축물
2.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드는 공공시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건립비용 공개 원칙 규정(제3조)
-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6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

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남동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 각 호
2.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골목형상점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건축일)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시장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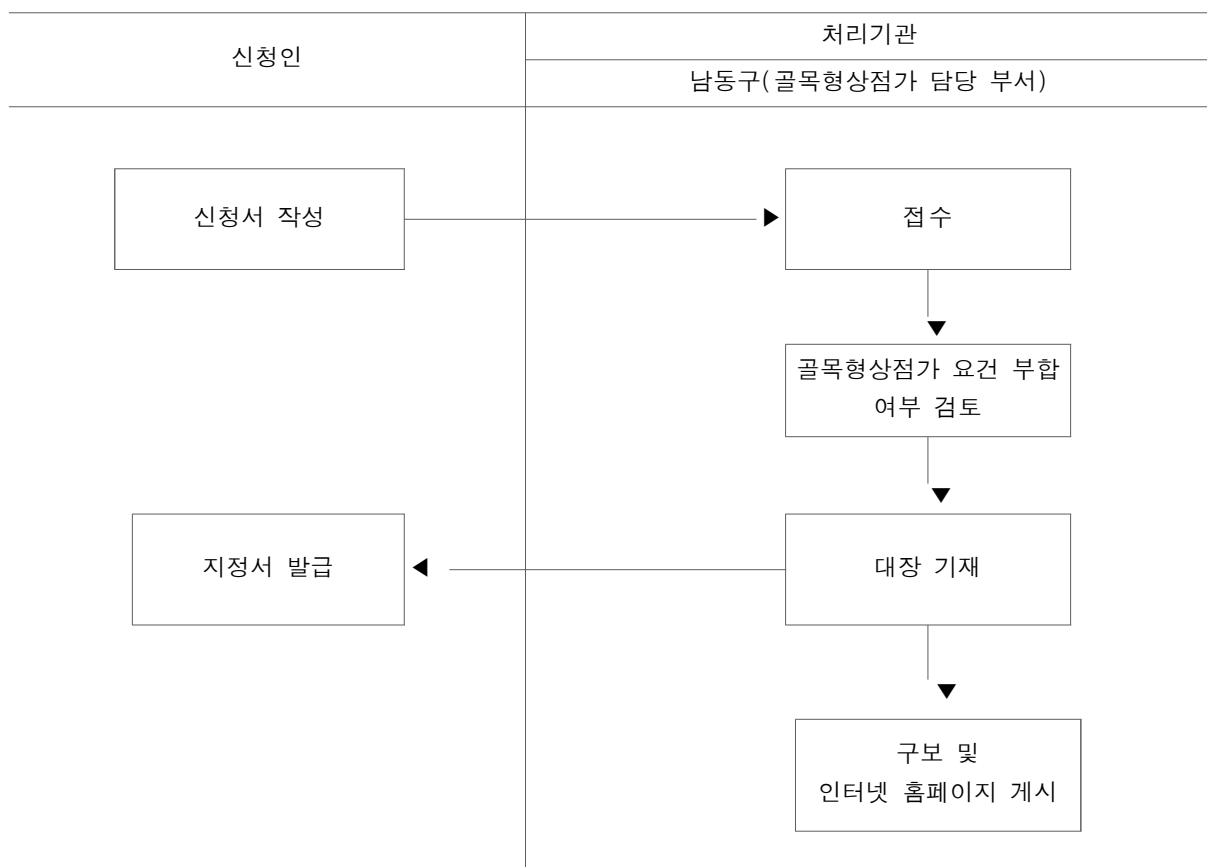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점포로 분류)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제1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 (제2조, 제3조)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제4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 (제6조, 제7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8조)
- 위원회 운영세칙 : (제9조)
- 조례의 준용 :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7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나.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4.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0.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구의 반려동물 보호 정책 시행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 등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 구조할 때에는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이 공고기간 내

에 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보호시설 및 단체에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 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표창) ①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소요경비 산출기준표 (제10조 관련)

1. 사료 등 급여 기준

동물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 타	-	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비고 :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와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 등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한다.

2. 소요경비 지급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 :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20/100이 내로 지급한다.

③ 치료비 : 부상 등 치료를 하였을 경우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④ 사료비 : 위 기준표에 의하여 급여한 사료량의 시중 판매가격으로 한다.

3. 그 밖의 비용

① 수송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포획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②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③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4. 기 타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청장과 위탁받은 자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동물보호 계획 수립(제6조)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제9조~제11조)
- 예산지원 및 표창(제15조, 제16조)
- 남동구 유기, 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8호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원칙)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다. 강등, 승진 제한,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라.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한 공식 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의 상담·조사를 위하여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구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희롱·성폭행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결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③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간접적·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적용원칙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제6조)
-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
-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
- 비밀엄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1조)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69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

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
3.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6.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센터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처분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결산) ① 센터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이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등·하교, 학습, 놀이문화 등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1조)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14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1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0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단위(원)

구분	2020~2024년	2025년 1월 1일부터	용도
5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ℓ	1,850	2,170	일반용 봉투
30ℓ	2,350	2,35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60ℓ	4,700	4,70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15kg)			
125ℓ	7,870	7,87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32kg)			
50ℓ	5,500	5,500	불연성 폐기물 마대
(13kg)			
50ℓ			공공용 봉투
100ℓ			공공용 봉투

비고 :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가격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구 수거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적용 및 명문화 필요
-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수거원)의 근골격계 관련 질환 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화 제고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 마련(제12조의3 신설)
-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중단 반영(별표 5)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1호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식물 등”을 “음식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

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3조 중 “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다량배출사업자”로, “위한”을 “위하여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장”을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위한”을 “위하여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조제3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를 “다량배출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신고 제출”을 “제출”로, “에”를 “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발생억제방법은”을 “발생 억제를 위하여”로, “호와 같다”를 “호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대해 보완”을 “대하여 보완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원화”를 “재활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조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를 “다량배출사업자”로,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으로, “발효건조에 의하여”를 “발효건조나”로, “소멸화하여”를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를 “다량배출사업자”로,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

3호”를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변경신고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재지를 변경한”을 “소재지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를 “연”으로 한다.

제22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9조제3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구 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판매 가격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판매 수수료	7원	14원	22원	36원	72원	144원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5×17	19×22.9	22×26	26×31	33×40	41×4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구 분	무게(kg)	부피(ℓ)
공동주택 단위무게 당 수수료	100원	1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비중 1.0 적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공백 또는 법령 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ℓ) 추가

□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제2조제1항제3호)
- 상위법령의 서식에 관한 인용규정을 정비함 :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1년으로 변경함 :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ℓ) 추가 : (별표 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제1조 등)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2호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

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남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우리 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촉진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설치대상 및 계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물 절약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3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재난·재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제31조제2항)
-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근거 조항 신설(제31조제3항제5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4호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 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

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제6조)
-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 :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5호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남동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 남동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남동구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2.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
3.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2.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 주소 및 거주 여부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	
	주 소				
세대주 남동구거주 시작일		년 월 일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임차주택	소 재 지				
현 황	임차금액(원)			소 유 자(관계)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잔액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신희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무주택 신희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희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월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 신희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인				최초 전입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상자 선정일	지급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제1조, 제2조)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제7조)
- 대장의 작성·관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6호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의 경우 소요경비 지원 근거와
- 감염병 대응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단 등으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이란 용어의 신설 (제2조제3호)
-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근거조항 신설 (제19조의2)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7호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및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동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4시간 이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⑥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남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활동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남동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2. 남동구의회의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협의를 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 헌혈추진협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7조,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8호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3.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부처, 의료기관,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
-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79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7. “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남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식품 발굴 및 브랜드식품 육성 사업
 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9. 공중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 조사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 구청장은 선정결과를 지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한다.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구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단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위생 단체	① 공익활동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비 등 ② 위생단체협의회 공익활동 사업 등	• 단체 또는 위생단체협의회 : 연 5,000만원 이내
위생 업소	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비 ② 그 밖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1개 업소 : 연 1,000만원 이내

※ 공통조건

- 1)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권고
- 2) 위생단체(협의회) 및 위생업소 지원 후 2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반현황	업소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업종		영업형태	
	소재지			
	건물관리 (해당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신청내역	☐ 위생단체 사업 지원 ☐ 위생업소 사업 지원 ☐ 기타()		
지원요구	사업비	총 사업비 원 (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2호 작성)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소명/ 단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부 아래 참조)

시설개선 등 세부 사업		수 량	금 액(원)
1			
2			
3			
4			
5			
계			

※ 세부사업 별지 작성 가능.

6. 기타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 지원 신청과 현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
-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제8조, 제9조)
- 위원의 임기와 해임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1조)
- 간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780호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이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 ① 표창 중 표창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이 추천한 경우와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표창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2년 이내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표창대장) ①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표창의 발급번호는 표창 종류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매긴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48조부터 제58조까

지를 삭제한다.

②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로패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기념패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상장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표창추천서

표 창 추 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추천훈격		추천순위	
추천사유			
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추 천 인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자)																
(2)생년월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적(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이내)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 6) 직 위										
(17)직 급							(1 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관 직위 년 월 일 성명 직인																	

(뒷면)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

[별지 제8호서식]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후보자

성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상 관리, 구청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방세 납부 여부>

남동구의회의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남동구의회의 의장표창 계획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납부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남동구의회의 의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남동구의회의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공적심사 의결서

구 분	주소 또는 소속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별지 제10호서식] 표창대장

표 창 대 장

[illegible]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표창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표창 상신 및 수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표창대상 및 종류(제2조 ~제9조)
-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제12조~제14조)
-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부칙 제2조)